

## 制度·技術적용 現実化 시급

지난 해 5월 정부가 그룹 VAN을 허용함에 따라 그룹사 정보처리 네트워크의 길이 열렸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민간 VAN이 시작되었다.

민간 VAN은 이미 선진 각국의 주요 기업에 의해 산업화되어 급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근래들어 그룹사들에 의해 경영정보 공동활용과 새로운 유망 사업 분야로서 구상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도입 욕구가 팽배된 적절한 시기에 민간 VAN이 허용됨에 따라 럭키金星을 비롯한 6개 그룹사가 이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상·기술상의 제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룹 VAN 진출 기업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본 협회는 국내 민간 VAN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립 28일 문제점들의 시정을 정책 당국과 공중통신사업자, 그리고 진출기업에 건의 했다. 그 내용을 전재한다. <편집자註>

### 制度 개선이 요망되는 課題

## 1. 다중화장치 사용기준의 제정 시급

### 건의요지

- 1)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다중화장치의 사용을 위해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2조 3호에 따른 기준을 속히 제정할 것을 요망함.
- 2) 사용기준 제정, 공표전은 경과 조치로 다중화장치 사용을 잠정허가할 것을 요청함.

### 건의이유

- 1) 다중화장치를 사용하면 회선에 접속되는 터미널 수가

증가되어 회선 이용율이 제고되어 장기적으로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익 증대효과도 예상됨.

2)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2조 3호에서 “다중화장치사용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했으나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아직 이 기준을 마련치 않고 있음.

3) 또한 한국데이터통신은 “특정통신회선 서비스 이용약관” 제20조에 체신부로부터 공동사용특례인정을 받은 경우 다중화장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4) 따라서 장치의 사용기준을 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전까지는 잠정조치로 다중화 장치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공동사용 특례인정과 역무제 공의 별도 네트워크구성의 시정

### 건의요지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로서 공동이용특례인정을 받은 경우 “특정통신회선 서비스 이용 약관” 제20조 2항에서 각각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구성토록 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요망함.

### 건의이유

- 그룹 VAN을 구축하는 그룹사가 이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공동이용특례인정과 정보통신 역무제공은 동일한 목적 즉, 그룹내 경영정보 활용을 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 그러나 이들을 각각의 망으로 구성할 경우 별도 컴퓨터를 보유해야 하므로 기업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되고, 또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적 손실로 판단됨.
- 그룹 VAN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공동이용특례인정과 기타 네트워크(일반공동사용 및 타인사용)을 동일컴퓨터상에 수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에 수반되는 기술상의 문제는 따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3. 그룹 VAN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정통신회선의 공동사용 범위 확대

### 건의요지

복잡한 기업외적 여건에 대응키 위해 그룹의 주요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선별 연결할 수 있도록 특정통신회선의 사용범위 확대가 요망됨.

### 건의이유

- 그룹은 하나의 집단이고, 복잡한 기업외적 여건에 대응키 위해 그룹외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신속, 정확한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특정통신회선의 공동사용범위 확대가 불가피함.
- 그러나 “특정통신회 서비스 이용 약관” 제18조 2항 6호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10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자본 총액의 10/100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업무상 계속적인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자 상호간”으로 그 사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함.

## 4. 회선사용요금 체제 개편

### 건의요지

- “특정통신회선 서비스 이용 약관” 제50조 3항에 따른 요금감면율 제정을 요청함.
- 전화급회선의 서비스 제공서비스가 속도에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현행 속도별 요금제도의 폐지를 요망함.
- 회선의 대여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혼합사용의 경우 별도의 실비제공이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요금의 적용은 부당함.

### 건의이유

- “특정통신회선 서비스 이용 약관” 제50조 1항 4호에 “청약자가 동일구간내 동일기간중 사용하는 시외회선을 3회선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의 회선사용료는 감면 할 수 있다.” 하였고, 동조 3항에서는 “요금감면율은 발표 제1호에서 정한다.”고 하였으나 별표 제1호에는 이 요금감면율 표가 포함 돼 있지 않음.
- 1200, 2400, 4800, 9600bps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속도별 요금제도는 전화급회선의 경우 서비스 제공서비스가 속도와는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이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제회선 혼합사용시 10%의 부가료가 적용되고 있는데 혼합사용의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별도의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요금의 부담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5. 국제특정통신회선의 해외 지사와 국내 본사간 공동 사용 허가

### 건의요지

독립법인 단독으로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간만 사용이 허용돼 있는 국제특정통신회선을 공동이용 특례인정의 경우로 보아 해당그룹 관계사가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것이 타당함.

## 건의이유

다량전송, 상시접속, 다수의 전송빈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외지사와 국내본사를 위한 국제특정통신회선의 공동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그룹 VAN의 허용 목적에 부합됨.

## 6. 공동이용특례인정 이전의 통신회선 사용권의 승계

### 건의요지

공동이용특례인정 이전 청약사용해 오던 통신회선의 경우 “특정통신회선 서비스 이용약관” 제38조(회선사용권의 승계)에 일반회선과 같이 청약해지 신청후 대표자가 다시 청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당연 승계로 인정함이 타당함.

## 건의이유

1) 공동이용특례인정 이전에 그룹 각사가 청약사용하던

회선 사용료를 각각 부담하던 것을 특례인정으로 “특정통신회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9조(공동사용 계약) 2항에서 공동사용자 대표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듯이 특례인정전 각사가 청약 사용하던 통신선로의 명의도 대표자에게 당연히 승계되어야 함.

2) 당연승계로 새로운 절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할 것으로 판단됨.

## 7. 기타

### 부호급과 음성급의 전용선 혼용사용 규제완화

- 1) 컴퓨터 및 전화교환기 컴퓨터를 별도로 운영해야하고, 이기기들을 회사별로 따로 설치운용 하도록 하고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공동접속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음성급은 기업 집단 내에 허용).
  - 2) 동일 국부지역 및 건물내의 전화교환기간 연동운영에 관한 규제도 해제 되어야함(단, 기업집단내에만 허용).
- 효과적 재난방지 대책 구축을 위한 자가무선설비 사용의 제약조건 완화.

## 공중통신사업자의 개선 과제

## 1. 통신회선의 품질보증

### 건의요지

- 1) 회선의 품질불량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공중통신사업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함.
- 2) 부호급에서 제공되는 56Kbps 이상의 고속회선 제공의 조기실현 및 신뢰성 있는 회선의 품질 보증이 요망됨.

## 건의이유

1) 통신선로의 품질은 기업의 업무처리 효율 및 대고객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품질이 우수

하지 못한 현행 음성급 9600bps 회선의 품질보증이 시급한 실정이며 회선의 품질 불량으로 사용자가 입게되는 손해는 마땅히 공중통신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2) 현재2개 회선만이 사용되고 있는 부호급 56Kbps 이상의 고속회선은 공동이용특례인정의 경우에도 원격지 프린팅 센서, CAD/CAM 정보의 전달, VAN 사업자의 BACKBONE NET 구축시 필요하므로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고속회선에 대해서도 품질보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 DNS(DACOM-NET SERVICE)의 품질개선 및 사용료 인하

### 건의요지

통신효율과 신뢰도에 문제점이 있는 DNS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부담을 덜기 위하여 DNS 요금인하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건의이유

1) DNS 통신효율과 신뢰도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서비스품질개선은 현재의 사용자는 물론 DNS의 잠재 사용자 개발에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

2) DNS 요금을 최근 대폭 인하한 바 있으나 기업의 과중한 통신비용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요금인하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됨.

## 3. 기타

다양한 통신회선 및 망구성기술의 개발로 사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망함

- 1) 통신망의 구성은 VAN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중통신사업자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선택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임.
- 2) 통신장비 공급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자의 제반 여건에 따라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법규 및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임.

### 企業의 노력이 필요한 과제

## 1. 전문인력의 양성

VAN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서비스산업이므로 VAN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임.

## 2. 체계화된 정보전달체제의 마련

이용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의 귀중한 재산이므로 이를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이 VAN 서비스 업체의 책임이라고 보아 기밀유지보안 체제의 구축이 긴요함.

## 3. 기밀보안 및 안전체제 구축 필요

자격있는 전문요원들에 의한 유효하고 신속한 정보의 전달체제를 구축함이 VAN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임.

###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과제

## 1. 연구개발 분야

각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와 산업체간의 기술협력 체제가 구축 되어야 하며 이 용기술의 확대를 위한 공동노력이 요망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VAN 운영방식의 개발 및 이의 적용에 노력하고 VAN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제고해야 함.

## 3. 표준화 노력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표준화안을 마련하여 이의 채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

## 2. 잠재고객의 수요창출